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9. 29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6. 9. 11. ~ 9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9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